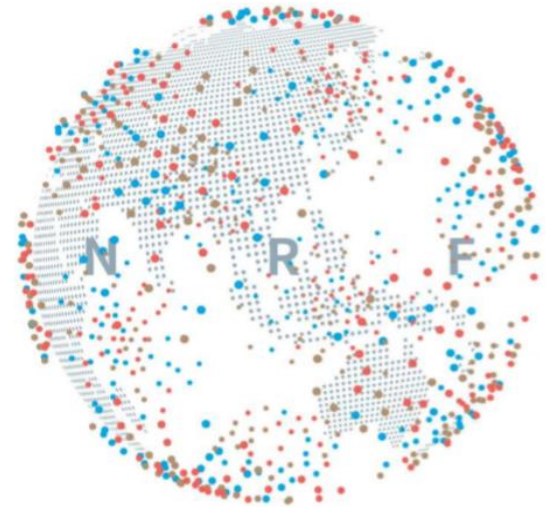


사업 평가제도 안내

2021. 1.

INDEX

- 01 평가개요
- 02 평가제도 운영
- 03 평가절차



01. 평가개요

학술진흥법

- 제6조(학술지원 대상자의 선정 등)
 -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, 결과의 보고·평가
- 시행령 제6조(학술지원 대상자 선정)
 - 선정평가단 구성·운영, 선정 결과 공개
- 시행령 제7조(협약)
 - 학술활동 결과보고 및 평가에 관한 사항 협약에 반영
- 시행령 제10조(결과평가)
 - 학술활동 성과 목표관리 및 성과 활용 촉진

국가연구 개발혁신법

- 제10조(연구개발과제 및 수행 연구개발기관의 선정)
 -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 선정기준
- 제14조(연구개발과제의 평가 등)
 - 평가단 구성·운영, 평가결과 통보에 따른 이의신청 제도
- 제15조(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)
 -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평가

평가 종류

① 선정평가

- ✓ 연구자 역량 및 연구계획서의 우수성
- ✓ 학문 분야별 균형발전 및 다양성 확보
- ✓ 연구 규모별, 연구기관별, 지역별, 성별 등의 균형·형평성

② 단계평가

- ✓ 연차 및 단계평가
- ✓ 당초 계획에 의한 연구 진행실적 및 차년도 연구계획

③ 최종평가

- ✓ 학술활동 결과보고서
(학술활동 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)
- ✓ 결과물 제출 시 평가 면제
(학술활동 기간 종료 후 2년 이내)

④ 특별평가

- ✓ 연구과제의 변경 및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평가
- ✓ 과제 수행 시 부정행위 발생, 연구책임자의 참여 제한 확정 등의 경우

※ (재평가)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수용 또는 평가과정에서 무효사유가 발생하는 등의 경우

평가 방법 - 사업에 따라 유형 상이

- (온라인 평가) 온라인으로 전문가에 의한 개별 심사
- (패널 평가) 연구계획서에 대한 집단 검토 및 토의를 통한 합의평가
- (발표 평가) 패널평가에서의 의문사항 확인, 연구진 연구수행 의지 및 기관협력사항 확인
- (PM Review) 해당 학문분야 PM이 전공평가 결과 검증(평가자 간 점수 격차에 대한 보완 및 검증 등)

1

평가의 전문성 유지

- ▶ PM제도 운영
- ▶ 평가위원 POOL 구축

2

평가의 공정성 확보

- ▶ 상관관계 적용, 배제심사자 제도 운영
- ▶ 평가위원 교육
- ▶ 평가 모니터링 제도 운영

3

평가의 투명성 강화

- ▶ 선정률, 평가위원 등 평가정보 공개
- ▶ 평가 종합의견 공개

4

학문분야별 균형발전과
다양성 확보

- ▶ 소외·보호 분야 지원

02. 평가제도 운영

개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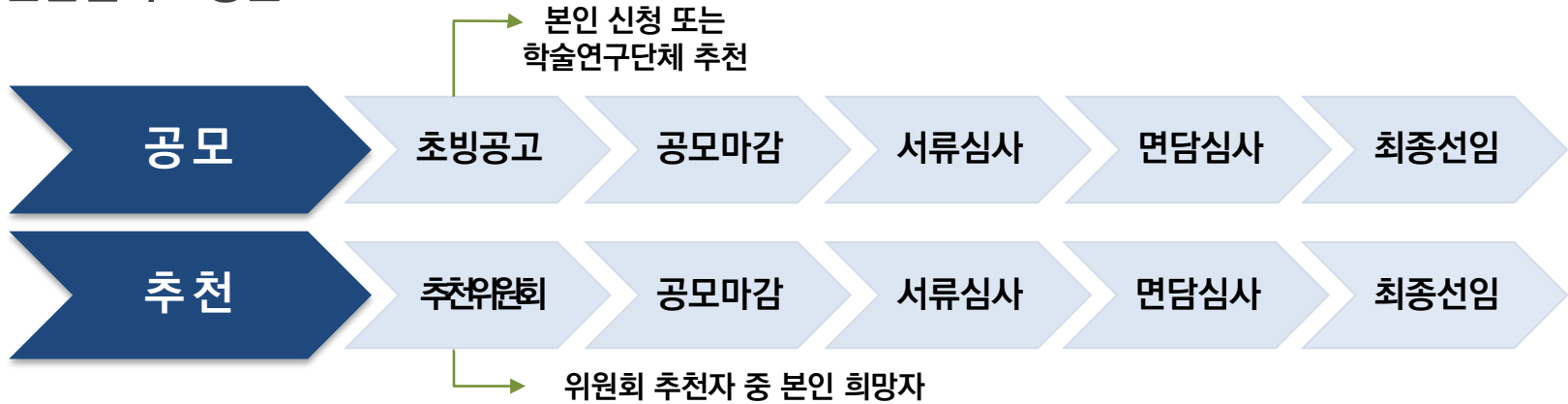
사업관리 전문성과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분야별 전문가에 의한 연구사업 관리제도

PM 구성 및 역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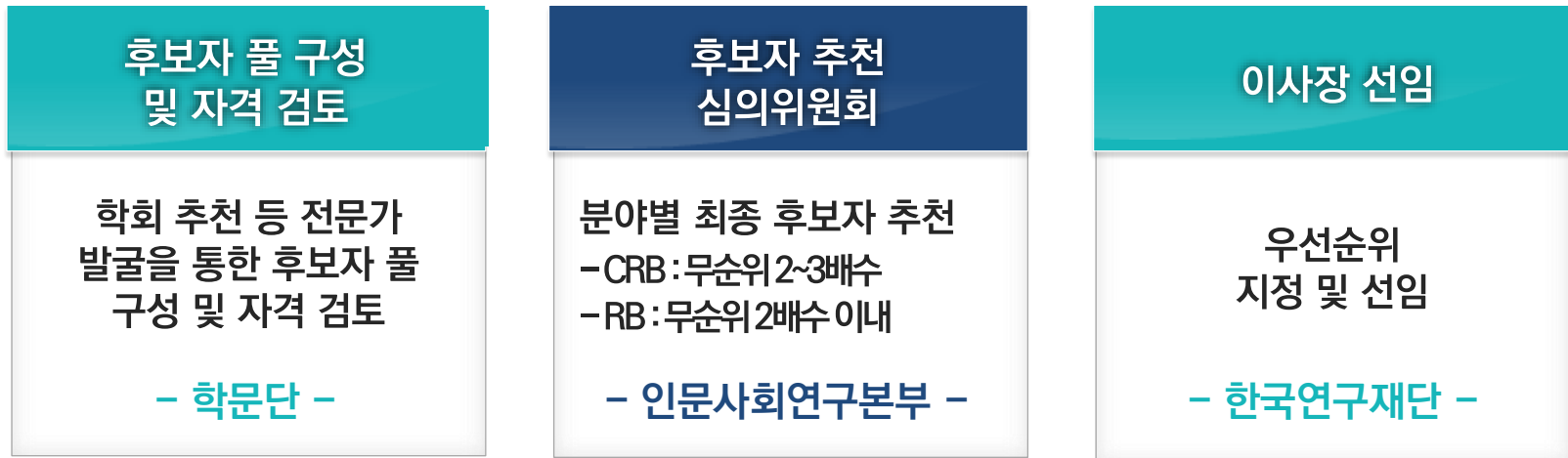


※ CRB : Chief of Review Board / RB : Review Board

선임절차 - 상근 PM



선임절차 - 비상근 PM



상근 PM 현황



비상근 PM 현황

학문단명	책임전문위원	전문위원	계
인문학단	6	99	105
사회과학단	7	84	91
문화융복합단	7	71	78
계	20	254	274

목적

적정한 평가위원 선정을 통한 평가의 전문성 유지 및 공정성 확보

평가위원 풀(Pool) 구축 기준

(1단계) 관련규정*을 적용하여 평가가능 인력 도출 * 관련근거: 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

- 대학의 해당 분야 교수, 부교수 및 조교수 이상인 사람
- 해당 분야 학술개발/학술연구 경력이 5년 이상 또는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

(2단계) 1단계 평가가능 인력 중, 연구업적 등을 기준으로 평가위원 풀 구축

- 연구성과(논문게재*, 국내외 특허등록, 공동 저역서) 2건 이상 보유한 사람

*국내전문학술지(등재 또는 등재후보 학술지), 국제전문학술지(SCI, SCIE, SSCI, A&HCI, SCOPUS)

- 최근 5년간 단독 저역서 1건 이상 연구성과 보유한 사람 등

풀(Pool) 구축 현황

자연과학	공학	의약학	농수해양	인문학	사회과학	예술체육	복합학
15,045	26,724	19,225	3,305	13,521	22,620	5,136	951

배제심사자 제도 / 상관관계 / 평가 모니터링단 운영 / 평가위원 명단 공개

배제심사자 제도

개요

과제 신청자가 배제할 평가위원 2인을 지정하는 제도

해당
사업

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(A유형), 신진연구자, 중견연구자, 우수학자, 명저번역, 저술출판, 일반공동(일반공동연구유형), 인문도시

상관관계 제도

개요

신청자 및 평가자간의 이해관계 가능성을 사전에 배제하는 제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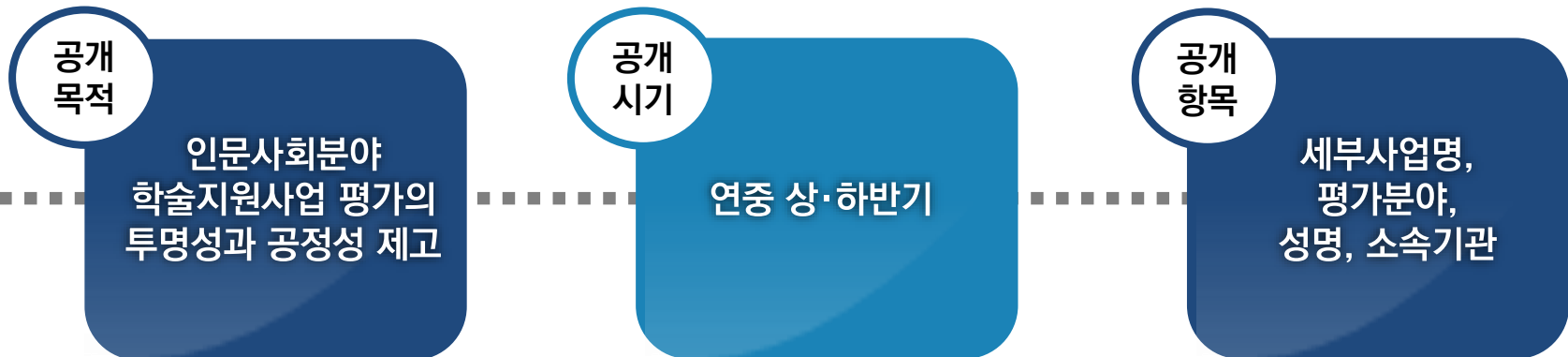
상관관계 적용안(예시)

연번	세부내용	개인	집단
1	참여제한자1(제재)	100	100
2	참여제한자2(평가위원 서약 및 준수사항 위반)	100	100
3	평가자가 동일사업 내 평가대상 과제의 연구책임자	100	100
4	평가자가 동일사업 내 평가대상 과제의 공동연구원	-	100
5	평가자가 동일사업 내 평가대상 과제의 박사급 연구원	-	100
6	평가자와 평가대상과제 연구책임 자간의 사제관계 (석사, 박사 모두)	100	100
7	평가자와 평가대상과제 연구책임 자의 현 소속기관 및 학과(부) 동일	100	100
8	평가자 소속기관과 평가대상과제 연구책임자의 주관기관 동일	5	5
9	평가자와 평가대상과제 공동연구원의 소속기관 및 학과 동일	-	5
10	평가자의 박사학위 지도교수와 평가대상과제 연구책임자의 박사학위 지도교수 동일(동명이인 포함)	5	5
11	평가자와 평가대상과제 연구책임자의 박사학위 취득기관 및 학과 동일	100	100
12	평가자와 평가대상과제 연구책임자의 박사학위 취득기관 동일	4	4
13	평가자와 평가대상과제 연구책임자의 석사학위 취득기관 및 학과 동일	4	4
14	평가자와 평가대상과제 연구책임자의 학사학위 취득기관 및 학과 동일	4	4
15	평가자와 평가대상과제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의 소속기관이 본교-분교 관계	4	4
16	해당 학문단 현 (책임)전문위원	5(신규과제)	

평가 모니터링단 운영

목적	구성	점검 항목	점검 방법
연구과제 평가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체계화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연구지원 관리체계 운영 도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✓ 감사인 ✓ 준감사인 (옴부즈맨, 감사자문위원회 위원 등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✓ 평가 진행의 적절성 ✓ 평가 절차의 투명성 ✓ 평가의 공정성 ✓ 평가위원 구성 ✓ 기타(평가윤리 등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✓ 현장 참관 ✓ 온라인 설문조사

평가위원 명단 공개



03. 평가절차

학문단

평가단계별 추진계획 수립
- 평가방법, 예산배분, 선정 규모 등

평가계획 수립

학문단

사업팀(연구자·연구소·학술지원팀)으로부터 접수과제 현황 및 평가요청, 평가계획 접수

평가요청 접수

CRB

신청과제 패널분류 및 필요 심사분야 설정
패널별 추천 전문위원(RB) 결정

패널구성

RB

패널별로 복수의 전문위원이 후보자 2배수 이상 추천

평가후보자 추천

CRB

추천된 평가후보자를 가, 나, 다 3군 구성
본부장/단장이 가, 나, 다군 중 평가자 섭외 순위 지정

평가후보군 구성

학문단 평가자 섭외 및 평가자 확정 평가자 확정

학문단 전공평가 실시(필요 시 PM Review 진행)
사업팀(연구자·연구소·학술지원팀)으로 평가결과 알림 평가실시

사업팀 전공평가 결과를 토대로 종합평가 진행 종합평가

사업팀 예비선정 과제 발표 예비선정

학문단 이의제기 타당성 검토 및 중복성 평가 이의제기 평가

개요

전공평가 과정·결과를 모니터링 및 검토하는 제도로써, 평가자간 점수 격차를 보완 및 검증하는 단계

검토대상

전공평가 단계 중 온라인평가를 실시하는 사업에서 평가자 간 점수가 일정(25점) 이상 차이 나는 과제

평가방법

대상별로 온라인
평가등급 및
평가의견 검토

조정이 필요한 경우
조정점수와
조정의견 명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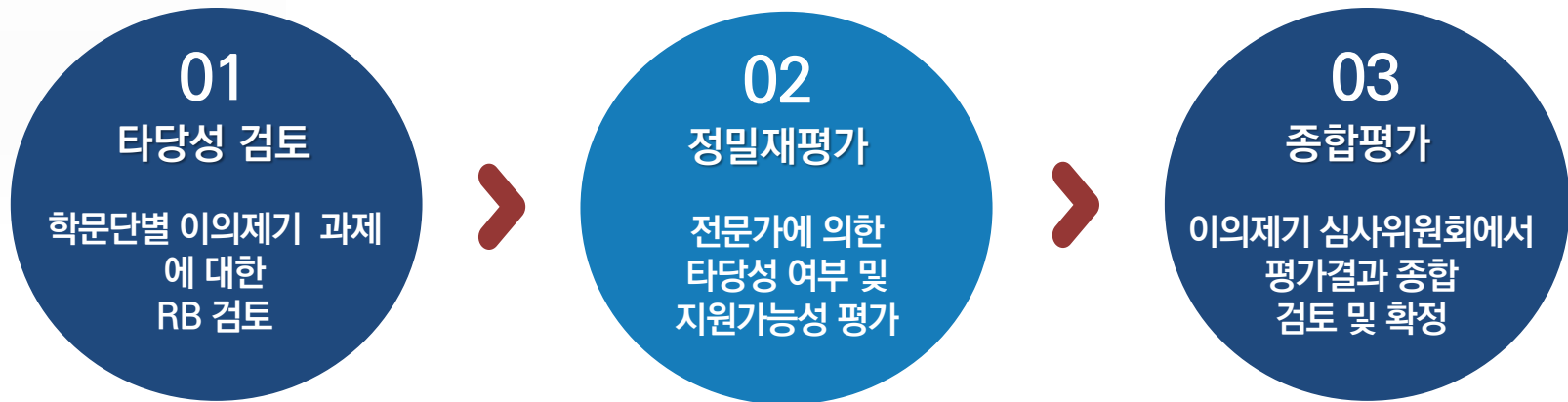
종합평가에서
조정된 내용을
검토하여 최종
적용여부 결정

개요

심사 평가의 질적 수준 제고 및 신청자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이의제기 및 처리절차 규정화

주요 단계 및 내용

※ 코로나-19 관련 이의제기 처리절차 간소화에 따라 심사위원회 폐지



이의제기 가능 사유

- 평가결과 의견 중 평가자의 결정적 오류가 발견되어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
- 재단의 명백한 행정오류의 경우

감사합니다.